

**의안분석보고서**

**ABC (000000)**

201X 년 03 월  정기주주총회

201X년 03월 0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PROXY SERVICE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신관 9층
E-mail : proxy@cgs.or.kr     Tel : (02) 3775-3701

본 의안분석보고서의 찬반 권고는 2014년 2월에 개정한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홈페이지(www.cg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BC [000000   KOSDAQ/WICS / 업종분류]

### 정기주주총회 일정

|  |
| --- |
| 날짜 : 201X년 03월 XX일 (금) 오전 9시 00분장소 : OO시 OO로 XX-X 1층 멀티홀 |

### 의안 및 권고안

| **부의안건** | **CGS 권고안** |
| --- | --- |
| 제1호 | 제XX기(201X.1.1~201X.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주당 XXX원) | 찬성 |
|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찬성 |
| 제3호 | 이사 선임의 건 |

|  |  |  |  |
| --- | --- | --- | --- |
| 3-1 |

|  |  |
| --- | --- |
| 사내이사 김OO 재선임 건 | 찬성 |

 |
| 3-2 |

|  |  |
| --- | --- |
| 사내이사 송OO 신규선임 건 | 찬성 |

 |
| 3-3 |

|  |  |
| --- | --- |
| 사외이사 조OO 재선임 건 | **반대** |

 |
| 3-4 |

|  |  |
| --- | --- |
| 사외이사 최OO 재선임 건 | 찬성 |

 |
| 3-5 |

|  |  |
| --- | --- |
| 사외이사 리OO 재선임 건 | **반대** |

 |
| 3-6 |

|  |  |
| --- | --- |
| 사외이사 조OO 신규선임 건 | 찬성 |

 |

 |
| 제4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 | --- | --- |
| 4-1 |

|  |  |
| --- | ---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조OO 재선임 건 | **반대** |

 |
| 4-2 |

|  |  |
| --- | ---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최OO 재선임 건 | **반대** |

 |
| 4-3 |

|  |  |
| --- | ---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조OO 신규선임 건 | 찬성 |

 |

 |
| 제5호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 제6호 | 제6-1호 의안: 이사회에서 기 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의 건 | 찬성 |
| 제7호 | 제6-2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찬성 |

### **COMPANY PROFI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집단 정보**

| **구분** | **내용** |
| --- | --- |
| 기업집단명 | ABC |
| 기업집단 동일인 | - |
| 기업집단 대표회사 | - |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해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입니다. **ESG 통합 등급**

|  |  |
| --- | --- |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지배구조·사회·환경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 ESG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음  | http://esg.cgs.or.kr/common/images/sub/report/2016_t_grade_b.png |

 |  |

|  |  |
| --- | --- |
| **주주구성** | 201X년 9월 30일 기준 |

| **주주명** | **주권의 수** | **지분율(%)** |
| --- | --- | --- |
| 김OO 외 XX인\* | XXX | XX.X% |
| M사 | XXX | X.X% |
| S사 | XXX | X.X% |

 \* 손OO, 이OO, 강OO, 엄OO, 조OO, 허OO, 남OO, 박OO, 김OO, 조OO, 이OO, 박OO, 조OO, 정OO, 염OO, 형OO, K사, 임OO, \* 금융감독원 지분공시보고서 기준입니다.\* 지분율이 5% 미만인 주주는 공시의무가 없으므로 기준일 이후의 실제 지분율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SG 통합 등급 분포**

|  |  |
| --- | --- |
| **201X** | 올해 등급분포 |
|  |  |
|   | d,c,b,b+,a,a+,s |
|  |  |
| **201X** | 전년도 등급분포 |
|  |  |

 |

#### **Financial Highlight**

| **구분** | **Annual** |
| --- | --- |
| **201X년 12월(승인전)\*** | **201X년 12월** | **201X년 12월** |
| 발행주식수(보통주) | 67,615,715 | 60,096,088 | 58,142,204 |
| 유통주식수(보통주) | 67,610,527 | 60,090,900 | 57,978,263 |
| 시가총액 (억원) | 52,064 | 69,591 | 71,317 |
| 자산총계 (억원) | 54,841 | 31,885 | 27,680 |
| 부채총계 (억원) | 17,812 | 6,030 | 3,048 |
| 자본총계 (억원) | 37,029 | 25,855 | 24,632 |
| 매출액 (억원) | 14,642 | 9,322 | 4,989 |
| 영업이익 (억원) | 1,161 | 886 | 1,764 |
| 당기순이익 (억원) | 655 | 788 | 1,498 |
| 배당총액 (억원) | 100 | 100 | 100 |
| 주당순이익(EPS) (원) | 874 | 1,269 | 3,243 |
| 1주당 배당금 (원) | 148 | 167 | 173 |
| 자기자본이익률(ROE) (%) | 1.77 | 3.05 | 6.08 |
| 영업이익률 (%) | 7.93 | 9.50 | 35.37 |
| 부채비율 (%) | 48.10 | 23.32 | 12.37 |
| 배당성향 (%) | 26.21 | 13.77 | 6.26 |
| 시가배당률 (%) | 0.20 | 0.14 | 0.14 |

\* 주주총회소집공고 상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재하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재무제표를 기재하였습니다.

\* 시가총액은 회계연도 마지막 영업일 당시 보통주 발행주식의 시장가치를 의미합니다.

\* 배당총액은 중간/분기배당을 제외한 기말배당만을 의미하되,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주당 배당금은 중간/분기배당을 포함한 연간 배당을 의미하되, 보통주 1주의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 회사가 주당순이익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3분기 분기보고서상의 유통주식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종 정보**

|  |  |
| --- | --- |
| **종목코드** |  00000 |
| **상장시장** |  코스닥시장 |
| **표준산업분류**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 http://esg.cgs.or.kr/common/images/sub/report/bu01.gif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00000)에 속한 기업은 당사를 포함하여, C사, G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201X년 평가결과 영역별 점수**

| **평가영역** | **환경(E)** | **사회(S)** | **지배구조(G)** |
| --- | --- | --- | --- |
| **영역별 점수(전년도)**  | **44** (67.2) | **92** (93) | **62** (114) |
| **영역별 등급** | C | B | B |
| **순위(업종내순위)** | 72/155 (7/50) | 20/155 (6/40) | 99/155 (24/40) |
| **코스닥시장 평균 점수** | 53.85 | 65.21 | 69.67 |

※ 201X년 ESG평가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713사 및 코스닥시장 187사임, 그 외 코스닥기업 734사는 지배구조 부문만 평가함



※ 2012년도 평가까지 사회 및 환경 부문 평가에 있어 평가기초 데이터가 전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등급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ESG 통합등급은 모든 부문, 즉 지배구조, 사회, 환경 부문에서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산출됩니다.

|  |  |
| --- | --- |
| **제 1 호** | **제XX기(201X.1.1~201X.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
| --- | --- | --- |
| 안 건 : | 보통주 1주당 148원의 배당지급 | 찬성 |

#### 1.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안) (단위: 억원, %)

| **구분** | **201X년 12월(승인전)** | **201X년 12월** | **201X년 12월** |
| --- | --- | --- | --- |
| 자산 총계 | 54,841 | 31,885 | 27,680 |
| 부채 총계 | 17,812 | 6,030 | 3,048 |
| 자본 총계 | 37,029 | 25,855 | 24,632 |
| 매출액 | 14,642 | 9,322 | 4,989 |
| 영업이익 | 1,161 | 886 | 1,764 |
| 당기순이익 | 655 | 788 | 1,498 |
| 자기자본이익률(ROE) | 1.77 | 3.05 | 6.08 |

#### 2. 배당현황(단위: 원, %)

| **구분** | **201X년 12월(승인전)** | **201X년 12월** | **201X년 12월** |
| --- | --- | --- | --- |
| 이익잉여금 | 2,902억 | 2,621억 | 1,992억 |
| 배당금 총액 | 100억 | 100억 | 100억 |
| 개별당기순이익 | 382억 | 729억 | 1,603억 |
| 1주당 중간·분기배당 | - | - | - |
| 1주당 기말배당 | 148 | 167 | 173 |
| 1주당 배당금 | 148 | 167 | 173 |
| 주당순이익 | 874 | 1,269 | 3,243 |
| 배당성향 | 26.21 | 13.77 | 6.26 |
| 시가배당률 | 0.20 | 0.14 | 0.14 |

\* 이익잉여금은 배당이 지급되기 전의 누적 이익잉여금입니다.
\* 기말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별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성향을 계산하였습니다.

#### 3. 정관 규정

| **배당요소** | **내용** |
| --- | --- |
| 중간배당 | 허용 |
| 차등배당 | 아니오 |
| 분기배당 | 규정없음 |

본 안건은 201X 회계연도(201X년 1월 1일~201X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이다. 보통주 1주당 148원의 배당지급 승인의 건을 포함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규발행 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고, 정관에서 규정하면 중간배당과 현물배당도 가능하다. 특히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이익배당은 상법에서 정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는 적정한 배당정책에 의해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배당해야 한다. 배당 금액은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계획, 동종업계 배당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너무 낮거나 높은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A사는 정관에서 중간배당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201X년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중간배당을 시행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공시가 없어 배당의 원칙과 기준, 결정절차, 고려사항 등을 명시한 배당정책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 **CGS 권고안**

동 회사의 201X 회계연도 배당성향과 보통주에 대한 시가배당률은 각각 26.21%와 0.2%로서 과거 수준에 비해 배당성향이 증가하였다. 이는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7.66% 감소한 것에 비해 배당지급액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으로 이익잉여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소하거나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안건에서 회사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익 침해를 우려할 만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다.

추후 공개될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 기재됨을 전제로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찬성 투표를 권고한다. 3월 7일 현재 감사보고서는 아직 공시되지 않았다.

|  |  |
| --- | --- |
| **제 2 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  |
| --- | --- | --- |
| 안 건 : | 정관 일부 변경 | 찬성 |

#### <정관변경 전체내용>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  |  |
| --- | --- | --- |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  |  |  |
| --- | --- | --- | --- |
| **의안**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1호** | **제 6조의 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2.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는 제6조의3에 의해 발행되는 종류주식의 수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범위 내로 한다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6.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8.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9.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2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10.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11.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제 6조의 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2.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는 제6조의3, 제6조의 4에 의해 발행되는 종류주식의 수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로 한다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6.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8.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9.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10.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 발행 후 3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11.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회사 규모를 감안하여 발행 한도 증액 및 관련 규정 수정 |
| **제2-1호** | **제 6 조의 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2.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는 제6조의2에 의해 발행되는 종류주식의 수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범위 내로 한다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6.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7.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8.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 종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9. 제7항 또는 제8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10.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11.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제6조의2 제7항 내지 제11항을 준용하여 상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제 6 조의 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2.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는 제6조의2, 제6조의 4에 의해 발행되는 종류주식의 수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로 한다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6.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7. 전환주식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8.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9. 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10.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제6조의2 제7항 내지 제11항을 준용하여 상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회사 규모를 감안하여 발행 한도 증액 및 관련 규정 수정 |
| **제2-2호** | **<신설>****제 6 조의 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 **제 6 조의 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2.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는 제6조의2, 제6조의 3에 의해 발행되는 종류주식의 수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로 한다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6.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종류주식의 추가 |
| **제2-3호** | **제 9 조 (일반공모증자)**1.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2.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 **제 9 조 (일반공모증자)**1.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2.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 회사 규모를 감안하여 발행 한도 증액 |
| **제2-4호** |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1.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억(2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정관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인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총액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액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며, 발행가액은 당해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4. 제3항의 발행가액은 회사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으로 한다.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있다. 6.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회계년도의 직전 회계년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년도 중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일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1.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5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정관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인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총액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액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며, 발행가액은 당해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제3항의 발행가액은 회사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으로 한다.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있다. 6.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회계년도의 직전 회계년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년도 중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일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 회사 규모를 감안하여 발행 한도 증액 |
| **제2-5호** | **제 38 조 (이익** **배당)**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 회계년도 말에 주주 명부에 등록된 주주 및 질권자에게 지급한다.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5.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의 완성 후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된다. | **제 38 조 (이익** **배당)**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떄에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에 배당할 주식을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하거나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만으로 할 수 있다.3. 제1항의 배당은 매 회계년도 말에 주주 명부에 등록된 주주 및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5.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의 완성 후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된다. | 이익배당 시 배당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높여줌. |
| **제2-6호** | <신 설> | 이 정관은 201X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개정에 따른 부칙 신설 |

#### **CGS 권고안**

본 안건은 정관 변경에 관한 건이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호: 종류주식의 발행한도 및 규정 변경의 건 (정관 제6조의 2 및 3)
제2-2호: 종류주식 추가의 건 (정관 제6조의 4)
제2-3호: 일반공모증자의 발행한도 변경의 건 (정관 제9조)
제2-4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변경의 건 (정관 제16조)
제2-5호: 이익배당 규정 변경의 건 (정관 제38조)
제2-6호: 기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수정한 정관조항 등에 대해 주주가치나 주주권익의 훼손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다.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찬성 투표를 권고한다.

|  |  |
| --- | --- |
| **제 3 호** | **이사 선임의 건** |

#### 1. 이사회 기본 현황

| **성명** | **직책** | **재임기간** | **후보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 소속 여부** |
| --- | ---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 **보상위원회** |
| 임OO | 사내이사 | 201X년 9월 ~ 201X년 9월 |  |  |  |  |
| 김OO | 사내이사 | 201X년 10월 ~ 201X년 9월 | O | O |  | O |
| 강OO | 사내이사 | 201X년 3월 ~ 201X년 3월 | 임기만료 |  |  |  |
| 이OO | 사외이사 | 201X년 3월 ~ 201X년 3월 | 임기만료 |  |  |  |
| 최OO | 사외이사 | 201X년 3월 ~ 201X년 3월 | 임기만료 |  | O | O |
| 조OO | 사외이사 | 201X년 10월 ~ 201X년 3월 | O | O | O | O |
| 최OO | 사외이사 | 201X년 10월 ~ 201X년 3월 | O | O | O |  |
| 리OO | 사외이사 | 201X년 10월 ~ 201X년 3월 | O |  |  |  |

\* 위원회 구성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회사가 구성원을 공시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2. 정관 규정

| **정관** | **내용** |
| --- | --- |
| 감사기관 | 감사위원회(의무) |
| 이사회 규모 (사외이사) | 11인 이내(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 |
| 이사회 의장 |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 |
| 선임 사외이사 | 규정없음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설치(추천위원회)(의무) |
| 집중투표제 | 배제 |
| 임기 | 사내이사 | 3년 이내 |
| 사외이사 | 3년 이내 |

본 안건은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4인 선임의 건이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하되, 그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 내에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해상충의 여지가 없도록 상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한편, 상법은 3/10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A사는 정관에서 집중투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법인으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를 추천한다. 동 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자격과 관련하여는 공시된 바가 없다.

동 회사의 이사회는 현재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5인,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이사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퇴임·재선임·신규선임을 고려하여 회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4인, 총 7인이 된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비중은 62.5%(5/8)에서 57.1%(4/7)로 낮아진다.

### **<제3-1호 의안>**

|  |  |  |
| --- | --- | --- |
| 안건 :  | 사내이사 김OO 재선임 건(임기 : 3년) | 찬성 |

#### 1. 후보 주요사항

| **이름**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 --- | --- | --- |
| 김OO  | 있음  | 본인  | 추천위원회  |

| **직업** | **관련 경력** |
| --- | --- |
| - (현) ㈜ABC 이사회 의장  | - OO대학교 대학원 OO과 졸업- S사- H사 설립- N사 합병 공동대표이사- N사 대표이사 사장- N사 USA, 대표- N사 비상임이사  |

#### **CGS 권고안**

김OO 사내이사 후보는 재선임 후보로, A사의 사내이사로 201X년 10월부터 재임 중이다.

동 후보는 사내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성, 윤리성, 충실한 의무수행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유로서 CGS의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결격사유 등 회사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찬성 투표를 권고한다.

### **<제3-2호 의안>**

|  |  |  |
| --- | --- | --- |
| 안건 :  | 사내이사 송OO 신규선임 건(임기 : 1년) | 찬성 |

#### 1. 후보 주요사항

| **이름**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 --- | --- | --- |
| 송OO  | 없음  | 없음  | 추천위원회  |

| **직업** | **관련 경력** |
| --- | --- |
| - P사 대표  | - OO 대학교 MBA (AICPA)- K사 LA Office Senior Manager - P사 전무 - C사 대표이사 - A사CFO  |

#### **CGS 권고안**

송OO 사내이사 후보는 신규선임 후보로, 현재 P사 대표로 재임 중이다.

동 후보는 사내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성, 윤리성, 충실한 의무수행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유로서 CGS의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결격사유 등 회사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찬성 투표를 권고한다.

### **<제3-3호 의안>**

|  |  |  |
| --- | --- | --- |
| 안건 :  | 사외이사 조OO 재선임 건(임기 : 1년) | 반대 |

#### 1. 후보 주요사항

| **이름**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 --- | --- | --- |
| 조OO  | 없음  | 없음  | 추천위원회  |

| **직업** | **관련 경력** |
| --- | --- |
| -  | - OO대학교 대학원 OO학과(KICPA) - 前 K회계법인 FAS본부장  |

#### **CGS 권고안**

조OO 사외이사 후보는 재선임 후보로, 현재 A사의 사외이사로 201X년 10월부터 재임 중이다.

조 후보는 201X년 3월까지 K회계법인의 FAS 본부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그런데 회사의 공시(201X년 8월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에 따르면, 회사는 201X년 4월 30일 K회계법인과 합병가액 평가 계약(B사와A사 합병 관련)을 체결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조 후보는 A사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었던 회계법인의 3년 내 특수관계인(임직원)이다.

이처럼 회사와 직,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었던 자가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 혹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만한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동일한 취지에서 CGS 가이드라인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법인의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대 투표를 권고한다.

### **<제3-4호 의안>**

|  |  |  |
| --- | --- | --- |
| 안건 :  | 사외이사 최OO 재선임 건(임기 : 1년) | 찬성 |

#### 1. 후보 주요사항

| **이름**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 --- | --- | --- |
| 최OO  | 없음  | 없음  | 추천위원회  |

| **직업** | **관련 경력** |
| --- | --- |
| - (현) OO대학교 OO학과 교수  | - OO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

#### **CGS 권고안**

최OO 사외이사 후보는 재선임 후보로, A사의 사외이사로 201X년 10월부터 재임 중이다.

동 후보는 사외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성, 독립성, 전문성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유로서 CGS의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결격사유 등 회사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찬성 투표를 권고한다.

### **<제3-5호 의안>**

|  |  |  |
| --- | --- | --- |
| 안건 :  | 사외이사 리OO 재선임 건(임기 : 1년) | 반대 |

#### 1. 후보 주요사항

| **이름**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 --- | --- | --- |
| 리OO  | 없음  | 없음  | 추천위원회  |

| **직업** | **관련 경력** |
| --- | --- |
| - Vice President, T사  | - Major in Economic Laws at OO University  |

#### **CGS 권고안**

리OO 사외이사 후보는 재선임 후보로, 현재 A사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며, 중국기업 T사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공시자료(201X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M사'는 A사의 지분 8.29%를 보유(201X.9.30 기준)하고 있는 주요주주(3대 주주)인데,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동 회사는 T사의 투자 자회사이다.

T사는 201X년 A사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컨소시엄(ABC뱅크)에 참여하고 실제 ABC뱅크 본인가 신청서에도 T사의 자회사가 주요주주로 등재되는 등 A사와 경영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요컨대, 리OO 후보는 A사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A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현직 임직원)이다.

이렇듯 회사와 협력관계가 있는 주요주주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 혹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만한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동일한 취지에서 CGS 가이드라인도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주요주주 본인을 포함하여 그 특수관계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대 투표를 권고한다.

### **<제3-6호 의안>**

|  |  |  |
| --- | --- | --- |
| 안건 :  | 사외이사 조OO 신규선임 건(임기 : 1년) | 찬성 |

#### 1. 후보 주요사항

| **이름**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 --- | --- | --- |
| 조OO  | 없음  | 없음  | 추천위원회  |

| **직업** | **관련 경력** |
| --- | --- |
| - OO대학교OO학부 부교수- OO대학교 OO기술연구센터장  | - OO 기계공학 박사- OO(Post-Doc.)- OO Microrobotics Lab (Post-Doc.)- OO대학교 조교수  |

#### **CGS 권고안**

조OO 사외이사 후보는 신규선임 후보로, 현재 OO대학교 OO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 후보는 사외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성, 독립성, 전문성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유로서 CGS의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결격사유 등 회사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찬성 투표를 권고한다.

|  |  |
| --- | --- |
| **제 4 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1. 감사위원회 현황

| **성명** | **직책** | **재임기간** | **후보여부** |
| --- | --- | --- | --- |
| 최OO | 감사위원(사외이사) | 201X년 3월 ~ 201X년 3월 | 임기만료 |
| 최OO | 감사위원(사외이사) | 201X년 10월 ~ 201X년 3월 | O |
| 조OO | 감사위원(사외이사) | 201X년 10월 ~ 201X년 3월 | O |

#### 2. 정관 규정

| **정관** | **내용** |
| --- | --- |
| 감사기관 | 감사위원회(의무) |
| 규모 및 구성 | 3인 이상, 전원 사외이사 |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미설치 |

본 안건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3인 선임의 건이다.

상법(제542조의11)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 비중이 2/3 이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 중 1인은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되, 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여야 한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해 3%로 제한된다. 또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4-1호 의안>**

|  |  |  |
| --- | --- | --- |
| 안건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조OO 재선임 건(임기 : 1년) | 반대 |

#### 1. 후보 주요사항

| **이름**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 --- | --- | --- |
| 조OO | 없음 | 없음 | 추천위원회 |

| **직업** | **관련 경력** |
| --- | --- |
| -  | - OO대학교 대학원 OO학과(KICPA) - 前 K회계법인 FAS본부장 |

#### **CGS 권고안**

조OO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는 재선임 후보로, 201X년 10월부터 A사의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조 후보는 201X년 3월까지 K회계법인의 FAS 본부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그런데 회사의 공시(201X년 8월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에 따르면, 회사는 201X년 4월 30일 K회계법인과 합병가액 평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조 후보는 A사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었던 회계법인의 3년 내 특수관계인(임직원)이다.

이처럼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었던 자가 A사 경영진의 업무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사할 만한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아울러 조 후보가 A사(B사와 합병하기 전)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던 201X년, 당시 외부감사인(OO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을 공시한 바에 따르면, 201X 회계연도의 비감사용역(합병 관련 자문용역, 합병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등) 보수액 12.16억 원은 당기의 감사용역 보수액 1.41억 원의 862%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렇게 비감사용역 보수가 감사용역 보수 보다 크게 되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이해상충을 야기하여 외부감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감사 혹은 감사위원은 회계감사가 독립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할 권한도 갖는 만큼 위 사례와 같이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계약 체결 혹은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하여 조OO 당시 감사위원의 책임이 적지 않다. 이 점에서 동 후보가 A사 경영진의 회계감사 등 직무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해 상당한 우려의 여지가 있다.

CGS 가이드라인은 사외이사 여부나 상근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사외이사로서 적격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즉,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사, 그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와 중요한 거래·경쟁·협력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면, 사외이사는 물론 감사위원으로서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CGS 가이드라인은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용역보수 중 기업공개(IPO), 도산, 구조조정, 세무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감사용역 보수가 감사용역 보수를 넘는 경우 감사 혹은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로 판단한다.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대 투표를 권고한다.

### **<제4-2호 의안>**

|  |  |  |
| --- | --- | --- |
| 안건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최OO 재선임 건(임기 : 1년) | 반대 |

#### 1. 후보 주요사항

| **이름**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 --- | --- | --- |
| 최OO | 없음 | 없음 | 추천위원회 |

| **직업** | **관련 경력** |
| --- | --- |
| - (현) OO대학교 OO학과 교수 | - OO대학교 대학원 OO학과 |

#### **CGS 권고안**

최OO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는 재선임 후보로, ABC의 감사위원으로 201X년 10월부터 재임 중이다.

최 후보가 A사(B사와 합병하기 전)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던 201X년, 당시 외부감사인(OO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을 공시한 바에 따르면, 201X 회계연도의 비감사용역(합병 관련 자문용역, 합병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등) 보수액 12.16억 원은 당기의 감사용역 보수액 1.41억 원의 862%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렇게 비감사용역 보수가 감사용역 보수 보다 크게 되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이해상충을 야기하여 외부감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감사 혹은 감사위원은 회계감사가 독립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할 권한도 갖는 만큼 위 사례와 같이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계약 체결 혹은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하여 최OO 당시 감사위원의 책임이 적지 않다. 이 점에서 동 후보가 A사 경영진의 회계감사 등 직무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해 상당한 우려의 여지가 있다.

이 점에서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용역보수 중 기업공개(IPO), 도산, 구조조정, 세무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감사용역 보수가 감사용역 보수를 넘는 경우 감사 혹은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로 판단한다.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대 투표를 권고한다.

### **<제4-3호 의안>**

|  |  |  |
| --- | --- | --- |
| 안건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조OO 신규선임 건(임기 : 1년) | 찬성 |

#### 1. 후보 주요사항

| **이름**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 --- | --- | --- |
| 조OO | 없음 | 없음 | 추천위원회 |

| **직업** | **관련 경력** |
| --- | --- |
| - OO대학교 OO대학 OO학부 부교수- OO대학교 OO기술연구센터장 | - OO 기계공학 박사- OO (Post-Doc.)- OO Microrobotics Lab (Post-Doc.)- OO대학교 조교수 |

#### **CGS 권고안**

조OO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는 앞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서 상정된 후보로, 이사회 업무를 충실히 감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서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결격사유 등 경영진과의 독립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과거 감사 업무와 연관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찬성 투표를 권고한다.

|  |  |
| --- | --- |
| **제 5 호**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  |  |
| --- | --- | --- |
| 안 건 : | 이사 보수 한도 승인 | 찬성 |

#### 1. 이사 보수 현황(단위: 명, 억원)

|  | **201X년 12월(승인전)** | **201X년 12월** | **201X년 12월** |
| --- | --- | --- | ---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7(4) | 9(5) | 7(4) |
| 이사 보수 한도 | 사내이사 | - | - | - |
| 사외이사 | - | - | - |
| 구분없음 | 80 | 80 | 80 |
| 1인당 이사보수한도 | 11.43 | 8.89 | 11.43 |
| 보상위원회 설치여부 | 설치 | 설치 | 설치 |

\* 이사의 수,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은 각 회계연도 주주총회에서 정한 차기의 예정인원과 금액을 의미합니다.

#### 2. 경영성과(단위: 원, %)

| **구분** | **201X년 12월(승인전)** | **201X년 12월** | **201X년 12월** |
| --- | --- | --- | --- |
| 주당순이익 | 874 | 1,269 | 3,243 |
| 1주당 배당금 | 148 | 167 | 173 |
| 자기자본이익률(ROE) | 1.77 | 3.05 | 6.08 |
| 영업이익률 | 7.93 | 9.50 | 35.37 |
| 부채비율 | 48.10 | 23.32 | 12.37 |

#### **CGS 권고안**

본 안건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다. 보수 한도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구별 없이 총액 한도로 제시되었다.

정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사는 이사의 급여와 상여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보수총액이나 최고한도액 산정과 관련한 세부 절차는 공시하고 있지 않다.

동 회사의 이사 1인당 보수한도는 11.4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나 이사 수가 2인 감소한 것에 따른 변동이며, 당해연도의 이사 1인당 보수한도는 이사회 규모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전년도를 제외하면 201X년과 201X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던 규모와 동일한 수준이다. 회사의 주당순이익이나 ROE 등 이익지표의 추이나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유인 등의 측면에서 이사보수한도에 특별히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다.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찬성 투표를 권고한다.

|  |  |
| --- | --- |
| **제 6 호** | **이사회에서 기 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의 건** |

|  |  |  |
| --- | --- | --- |
| 안건 :  | 이사회에서 기 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 | 찬성 |

#### 1. 안건의 요지

(1)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 제1항에 의거, 201X년 3월 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임.

(2)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보상방식(차액주식보상방식, 차액현금보상방식) 중 행사 시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함.

(3) 행사가격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4)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1) 2019년 3월 2일 ~ 2024년 3월 2일 : 50% 행사 가능
2) 2020년 3월 2일 ~ 2024년 3월 2일 : 100% 행사 가능
부여대상자 가운데 일부 직원에 한해서는 행사가능기간 동안 행사가능일 또는 그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어느 평균주가가 행사가격의 150% 이상을 기록한 경우만 행사가 가능하며, 만일 평균주가가 200% 이상을 기록한 경우에는 2년 후 전량 행사 가능(평균주가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5)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의 상환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6)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7)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Black-Scholes Model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①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85,400원
② 기대행사기간: 2.5년
③ 무위험이자율: 1.67%
④ 예상주가변동성: 48.63%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  |  |
| --- | --- |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

|  |  |  |  |  |
| --- | --- | --- | --- | ---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OOO | 직원 |   6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6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6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2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2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2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12,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12,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12,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12,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12,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12,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1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1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1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1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1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10,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8,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6,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6,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6,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6,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6,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6,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6,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6,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6,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6,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6,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6,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6,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5,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5,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5,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5,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5,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5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OOO | 직원 |    4,000 | - | 24,080 | - |
| 합계 | - | XXX | - | - | -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음.

#### **CGS 권고안**

본 안건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으로 XX명의 임직원에게 총 XXX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보상형태를 검토하여 장기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은 성과와 연계하여 설정하되 시장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도 혹은 행사 제한 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장기성과와 연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A사는 '회사의 경영,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의 장기간 retention 및 인센티브 부여'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필요성으로 밝히고 있다. 우선, 행사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득을 시장요인의 영향이 배제된 순수한 기업 성과와 연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5년에 걸쳐서 행사(1차년은 50% 이내, 2차년부터 100% 행사 가능)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장기성과 유인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기타 조건의 개요’에서 부여대상자 중 일부 직원에 한해 “행사가능기간 동안 행사가능일 또는 그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어느 평균 주가가 행사 가격의 150% 이상을 기록한 경우만 행사가 가능하며, 만일 평균 주가가 200% 이상을 기록한 경우에는 2년 후 전량 행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행사 가능 주식 수를 달리함으로써 행사 요건을 장기 성과와 연계하여 설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찬성 투표를 권고한다.

|  |  |
| --- | --- |
| **제 7 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  |  |  |
| --- | --- | --- |
| 안건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찬성 |

#### 1. 안건의 요지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핵심 임직원에 대한 장기간 retention 및 인센티브 부여를 목적으로 함.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  |  |  |
| --- | --- | --- | --- |
|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임OO | 임원 | 대표이사 | 보통주 | XX |
| 총( 1 )명 | - | - | - | 총(XX)주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XX주 |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 행사가격: 정기주주총회 의결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원단위 미만 절사) - 행사기간:2019년 3월 17일 ~ 2024년 3월 17일:  50% 행사가능2020년 3월 17일 ~ 2024년 3월 17일: 100% 행사가능 | - |
| 기타 조건의 개요 | - 행사가능기간 동안 행사가능일 또는 그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어느 평균주가가 행사가격의 150% 이상을 기록한 경우만 행사가 가능하며, 만일 평균주가가 200% 이상을 기록한 경우에는 2년 후 전량 행사 가능(평균주가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 -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  |  |  |  |  |
| --- | --- | --- | --- | --- |
| **총발행주식수** | **부여가능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주식수** | **잔여주식수** |
| XXX | 발행주식 총수의 15% | 보통주 | XXX | XXX |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종류** | **부여주식수** | **행사주식수** | **실효주식수** | **잔여주식수** |
| 201X년 | - | - | - | - | - | - | - |
| 201X년 | - | - | - | - | - | - | - |
| 201X년 |   |   |   |   |   |   |   |
| 계 | - | 총( 0 )명 | - | 총(  0  )주 | 총(  0  )주 | 총(  0  )주 | 총(  0  )주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CGS 권고안**

본 안건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으로 1명의 임원에게 총 XX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보상형태를 검토하여 장기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은 성과와 연계하여 설정하되 시장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도 혹은 행사 제한 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장기성과와 연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A사는 '핵심 임직원에 대한 장기간 retention 및 인센티브 부여'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필요성으로 밝히고 있다. 우선, 행사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득을 시장요인의 영향을 배제한 경영자의 순수 경영실적과 연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5년에 걸쳐서 행사(1차년은 50% 이내, 2차년부터 100% 행사 가능)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장기성과 유인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기타 조건의 개요’에서 “행사가능기간 동안 행사가능일 또는 그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어느 평균 주가가 행사 가격의 150% 이상을 기록한 경우만 행사가 가능하며, 만일 평균 주가가 200% 이상을 기록한 경우에는 2년 후 전량 행사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행사 가능 주식 수를 달리함으로써 행사 요건을 장기 성과와 연계하여 설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찬성 투표를 권고한다.

이 보고서는 주주총회 의안을 분석하여 찬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결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작성자 자신의 주관적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일체의 외부의 개입 없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찾아서 작성한 것이지만, 분석 대상 회사나 이사 후보 등 개인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기 바라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자료,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민ㆍ형사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소유로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한하여 제공되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동의 없이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일체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